

춘천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가합307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춘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지훈, 이송호, 이지혜

변론 종결2022. 9. 7.

판결 선고2022. 10.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금 563,641,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와 주식회사 B사이의,
가. 2016. 7. 15.자 사업시행자 변경동의를,
나. 2016. 7. 20.자 인허가 및 부담금 관련 권리승계 합의를,
다. 2016. 8. 9.자 허가권 권리 · 의무 승계 합의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3,6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563,641,000원의 지방세채권(본세 177,051,390원 + 가산금 386,589,610원)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 등

1) 강원도지사는 2008. 10. 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춘천시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체육시설(골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강원도 고시 D).

2) 원고는 위 고시에 기초하여 2008. 10. 24. 구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해 춘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였고(춘천시 고시 E), 2009. 3. 6. B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으며(춘천시 고시 F), 2009. 8. 28. 구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춘천시 고시 G).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 2010. 1. 22. 사업내용 중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만 일부 변경한 내용으로 춘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춘천시 고시 H)

○ 2010. 5. 10.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수용재결

○ 2011. 12. 30. 사업시행기간을 2013. 12. 31.로 연장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춘천시 고시 I)

○ 2014. 3. 21. 사업시행기간을 2015. 8. 27.까지로 연장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춘천시 고시 J)

○ 2015. 9. 25.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권리자 변경, 준공예정일을 2015. 11. 19.로 연장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춘천시 고시 K)

○ 2016. 1. 15. 준공예정일을 2017. 11. 19.로 변경, 사업부지 면적 정정, 사업시행자의 대표이사 변경, 사업부지 소유주·권리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춘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춘천시 고시 L)

3) B은 2009. 7. 6.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과 각 회사가 운영하려는 골프장에 관개용수를 공동으로 공급하기 위해 O에서부터 송수관로를 공동으로 설치,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19. M과 외부용수 인입 공사 중 공동구간과 중간가압장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원고로부터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 위 각 계약에 따라 M, N과 춘천시 P 일원부터 춘천시 Q 일원까지 이르는 구간 및 춘천시 R 일원에 송수관로(이하 '제1구간 송수관로'라 한다)를 설치하고, M과 춘천시 S 일원부터 춘천시 T 일원까지 구간에 송수관로(이하 '제2구간 송수관로'라 한다)를 설치하였으며, 단독으로 춘천시 U 일원부터 춘천시 V 일원까지 송수관로(이하 '제3구간 송수관로'라 하고, 제1 내지 3구간 송수관로를 통틀어 '이 사건 송수관로'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4)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농지전용 부담금	2009-11-30	250,227,040	
생태계보전 협력금	2010-01-20	390,162,150	
숲가꾸기 환수금	2009-12-18	2,740,610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법정부담금	2010-01-29	995,545,070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수수료	2010-01-29	110,616,110	
합계		1,749,290,980	

다. 피고의 이 사건 합의서 제출 및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

1) B은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6. 6. 17. 채무자 W 주식회사, 채무자 X 주식회사, 채무자 Y 주식회사, 채무자 Z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춘천시 C 임야 68,033m² 외 96필지를 126억 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6.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변경을 신청하였다.

2) B은 2016. 7. 15. 원고에게 '사업시행자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당사는 위 사업의 시행권자로서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춘천시장이 피고를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2. 당사는 위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자로서의 지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춘천시장 및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가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3) B과 피고는 2016. 7. 20. '인허가 및 부담금 관련 권리승계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B이 받은 산지전용허가권, 농지전용허가권 등 모든 인·허가권 및 이에 따르는 지위와 권한을 피고가 승계하는 데 합의한다.
2.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B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납부한 각종 부담금(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숲 가꾸기 환수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농지전용 부담금 등 일체의 부담금)에 대한 납부자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며, 위 각 부담금에 대한 증액, 환급 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3. 다만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납부한 부담금 중 산지복구에치비는 원고에게 귀속되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시 피고는 이를 신규로 납부하기로 한다.

4) B과 피고는 2016. 8. 9. '허가권 권리 · 의무 승계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2016. 7. 15.자 '사업시행자 변경 동의서', 2016. 7. 20.자 '인허가 및 부담금 관련 권리승계 합의서', 2016. 8. 9.자 '허가권 권리 · 의무 승계 합의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위 합의서에 의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B이 춘천시 건설과로부터 허가받은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 등 아래 항목의 모든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권한을 피고가 승계하는 데 합의한다.

하천점사용	AA / 2014. 3. 10.	AB	기간연장 포함
소하천점사용	AC / 2014. 3. 10.	AD	기간연장 포함
소하천점사용	AE / 2014. 3. 10.	AF, AG	기간연장 포함
공유수면 점사용	AH / 2014. 3. 10.		기간연장 포함

2. B이 한국수자원공사 AI댐관리단으로부터 "댐용수 사용승낙서(AI댐관리단-AJ)"의 모든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권한을 피고가 승계하는 데 합의한다.

3. B이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허가받은 도로점용 아래 항목의 모든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권한을 피고가 승계하는 데 합의한다.

도로점용	AK	국지도 AL	기간연장 포함
도로점용	AM	국지도 AL	기간연장 포함

4. B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협의받은 "환경영향평가"와 "비점오염원(제 원주청-AN 및 기간연장 포함)" 관련 설치 신고 관련하여 모든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권한을 피고가 승계하는 데 합의한다.

5. B이 M 및 N과 2009. 7. 6. 합의한 "수자원의 공동개발 등에 관한 합의서(2009년 제3710호)" 관련하여 B의 합의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데 합의한다.

6. B이 M 및 N과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받은 하천수사용허가와 관련하여 B의 합의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데 합의한다.

하천수사용허가	AO	O	허가권자: M 대표이사
---------	----	---	--------------

5) 원고는 2016. 8. 10. 피고에 대해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 소하천점용허가를

승계하는 것을 허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 2016. 8. 19.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B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AP컨트리클럽)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 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춘천시 고시 L).

라. 피고의 대위변제

피고는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 중 8,216,010,6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1	B	친인척의 채무	AQ 외 15		3,521,890,949
2	B	직원 임금 채무	AR 외 7		473,949,263
3	B	직원 건강보험 채무	국민건강보험공단		65,021,300
4	이 사건 송수관로 (제1,2,3구간) 채무	AS, M, AT		1,876,467,850	
5	각종 점 사용료, 대부료 등	춘천시		11,768,680	
6	송수관로 점·사용 관련 도로 점용료	한국자산관리공사		12,755,330	
7	송수관로 점·사용 관련 도로 점용료	강원도		29,833,320	
8	환경평가 과태료	원주지방환경청		15,180,000	
9	이 사건 골프장의 토목공사 채무	AU		1,220,000,000	
10	페어웨이 파종 등 공사 채무	AV		170,544,000	
11	B	소유 AW 압류해제	춘천시		450,000,000
12	C	근저당권 말소	AX		38,000,000
13	사업부지 내 분묘 이장 보상비	AY		54,000,000	
14	B	변호사 보수 채무	법무법인 AZ		270,000,000
15	홈페이지(도메인 유지)	BA		6,600,000	
			합계		8,216,010,692

마.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7. 9. 5. 지방세법 제48조에 근거하여 피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피고에 대해 합계 563,641,000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11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2. '피고가 2016. 4. 2. B과 체결한 'AP컨트리클럽 정상화를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에 의해 B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0. 12. 21. '피고가 B로부터 독립한 경영단위로서의 기업체를 B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9누1079호), 위 판결은 2021. 4. 29. 확정되었다(이하 '제1선행 사건'이라 한다).

2) 원고는 2018. 2. 10. 피고가 2016. 6. 17.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취득가격에 B에 지급한 대위변제금 등 합계 6,815,795,572원이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과세표준에서 위 금액을 누락시켰다는 사유로 위 누락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340,748,870원, 지방교육세 31,348,560원, 농어촌특별세 15,674,2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923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2. '피고의 대위변제금 등이 피고가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1누895), 항소심법원은 2022. 8. 24.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9. 15. 확정되었다(이하 '제2선행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5, 17호증, 을 제1, 3, 6, 1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가. B은 2016년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책임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합의로 유일한 재산이었던 위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켰다. 이 사건 합의의 이면에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B에게 위 재산에 대한 대가로 110억 원(= B의 채권자들에 대한 대위변제금 95억 원 + 지장물 이전 비용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으므로,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꿈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B이 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자 지위		
① 대체 산림 조설비	995,545,070	피고 승계 (2016.7.20.)
② 농지부담금	250,227,040	
③ 생태계 보전 협력금	390,162,150	
④ 숲 가꾸기 환수금	2,740,610	
⑤ 대체 산림 조성비 취급 수수료	110,616,110	
합계	1,749,290,980	
2 이 사건 송수관로 시설 구축물 등 점·사용권	피고 승계 (2016.8.10.)	필수 시설
3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① 하천 점·사용/ AB Q		피고 승계 (2016.8.10.)
② 소하천 점·사용/ AD BB		
③ 소하천 점·사용/ AF AG BC		
④ 공유수면 점·사용/ 공유수면(BC BD 등)		
4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피고 승계 (2016.8.19.)	무형의 사업권

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어 사해행위취소를 통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며, 사해행위취소 목적물의 가액은 9,216,010,692원(피고가 B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 8,216,010,682원 + 지장물 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 10억 원)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액인 563,64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6. 7. ~ 8.경 이 사건 합의로 B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1선행 사건에서 2019. 4. 9.자 준비서면을 통해 'B이 2011. 6.

28.경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모두 상실하였고, 2015. 5. 29. 폐업신고까지 하였으므로, B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무렵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고는 늦어도 2019. 4. 9.경에는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위 각 시기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12 내지 14,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합의서가 원고에게 제출된 시점 또는 2019. 4. 9.경에 사해행위의 취소원인, 즉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2014년경부터 B에 발송한 공문들 중 2016. 4. 29.자 공문, 2016. 6. 29.자 공문을 제외한 나머지 공문들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원고 부서(도시계획과, 세정과)에서 작성한 것이고,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징수과에서 B에 발송한 2016. 4. 29.자 공문, 2016. 6. 29.자 공문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확보한 후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4억 5,000만 원의 B 체납액을 대위변제하고, B이 1억 1,000만 원의 체납액을 동시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의 위 신청을 수용하고, 춘천시 AW(248m²)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것을 조건부로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위 각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원고 징수과가 그 당시 이 사건 합의의 존재 및 B의 사해의사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② 피고가 제1선행 사건에서 2019. 4. 9.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무렵 B은 보유자산이 거의 없었고, 사실상 해체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제1선행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 하나만으로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사업시행자 지위 및 실시계획인가, 무형의 사업권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업시행자 지위 및 실시계획인가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참조).

그런데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토계획법령에 도시계획시설사업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구 국토계획법 제95조에 근거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자체 또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으로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그 시행자 지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대법원 1982. 3. 9. 선고

81누31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토계획법상 사업권은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B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무형의 사업권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또는 그 이면에 있는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B로부터 무형의 사업권, 즉 B이 가진 모든 인허가 등 일정한 사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87다카2833 판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선행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은 'B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대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영악화로 골프장 조성공사를 중단한 채 폐업신고를 하였던 상황으로,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이 될 기능적 재산을 갖고 있지 못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각종 인·허가권자의 지위를 포함한 B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지위를 인수하고 B의 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하기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 B이 보유하고 있었던 권리와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B이 이 사건 사업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피고에게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21. 4. 29.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인정사실과 달리 B이 이 사건 합의 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이 될 기능적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권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적격 여부

하천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에는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는 '소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양수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법은 도로법 제106조 제5항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소하천점용허가의 목적물이 양도될 경우 하천점용허가, 소하천점용허가도 함께 양도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사용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점·사용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므로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어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규정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그 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부지의 대부분을 취득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원고는 2016.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와 관련된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되어 있으므로 B에서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뒤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B로부터 위 각 허가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통보하였고, B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권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각 허가는 이미 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였고, 원고로서는 B이 피고에게 위 각 허가를 양도한다는 조건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잃을 예정인 B에 대해 점·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리 없으므로, B이 이 사건 합의 당시 가지고 있던 위 각 허가에 관한 권리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사용권을 양도한 행위가 B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이 사건 송수관로의 점·사용권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사용권을 승계받음으로써 이 사건 송수관로에 대한 공법상 점·사용권을 승계받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상 대위변제 약정 및 대위변제금 정산을 통해 이 사건 송수관로에 대한 민법상 점·사용권을 승계받았으며,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수관로의 점·사용권을 양도한 행위는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201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송수관로를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하천법 제33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은 공작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 등을 위해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사유 중 하나로 공작물,

인공구조물의 신축을 규정한 것일 뿐, 공작물, 인공 구조물에 대한 공법상 점·사용권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B이 이 사건 합의로 피고에게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권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송수관로에 대한 공법상 점·사용권까지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법에는 도로법 제106조 제5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없어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사용권은 점용의 대상이 되는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과 별개의 독립된 가치를 가진 공법상 권리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로 B로부터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사용권을 승계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까지 함께 양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합의 중 2016. 8. 9.자 '허가권 권리 · 의무 승계 합의서'에 "B이 M, N과 2009. 7. 6. 합의한 '수자원의 공동개발 등에 관한 합의서(2009년 제3710호)'와 관련하여 B의 합의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데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M, N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송수관로에 대한 점·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B, M, N이 체결한 2009. 7. 6.자 계약, B, M이 체결한 2010. 11. 19.자 계약은, O에서 위 각 회사가 추진하던 골프장까지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송수관로 중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을 공동으로 용역비를 부담하여 설치하고, 설치된 송수관로를 통해 공급되는 용수를 일정 비율에 따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제1, 2구간 송수관로는 B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그 보유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었고, B이 협의 또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용·사용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송수관로 전체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⑤ 제3구간 송수관로의 경우, B이 그 소유 부지에 단독으로 설치하여 해당 부지에 부합되었다고 한다면, B은 민법 제256조에 따라 위 송수관로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국토계획법은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95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인접한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B로부터 제3구간 송수관로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제4조 제2항에서 '민현기가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변경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사업부 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승계를 포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서류의 준비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수관로의 점·사용권을 양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송수관로를 설치한 공사업체(주식회사 AS, M, 주식회사 AT)에 대한 B의 공사대금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피고의 대위변제금이 이 사건 송수관로의 점·사용권에 대한 양도대가라고 추단하기 어렵다(나아가 B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송수관로의 점·사용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용역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6. 4. 2.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양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7. 기 납부 부담금의 납부자 지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적격 여부

원고는 B이 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포함한 납부자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농지법 제38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등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부담금 등을 납부한 자는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 부담금 산정의 오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 납부한 부담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상 그 양도가 금지되어 있지 않고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재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B의 환급청구권 등 기 납부된 부담금에 대한 납부자 지위를 양수한 대가로 B의 채권자들에게 위 부담금 상당액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B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 기 납부된 부담금에 대한 증액, 환급 등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위 대가가 부당한 염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B의 채권자들에게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기 납부된 부담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B이 피고에게 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자 지위를 양도한 행위는 B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실제로 1,749,290,98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B의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하였던 점, ③ 피고가 대위변제를 하였던 B의 채권자들 중에는 원고도 포함되어 있고, B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위 채권자들과 통모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 납부 부담금의 납부자 지위가 BE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피고에게 위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부상준

판사지예현

판사배성준